

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3169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3. 3. 6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3월 6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2022년 9월 조직개편으로 안전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사항을 현 안전담당관 체제에 맞게 변경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난 발생지역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대책본부의 구성사항 일부 개정(안 제4조)
- 나. 직무대행 직제명칭 변경(안 제6조)
- 다. 체제 변경에 따른 대책본부 역할 담당자 개정(안 제7조)
- 라. 별표나 별지 서식 내 체제 및 부서명 일괄 정비(별표 1~5)

4. 검토의견

- 2022년 9월 조직개편으로 안전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사항을 현 안전담당관 체제에 맞게 변경하고, 운영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